

제 5 장

기사 수정 / 열람·검색 차단 사례

제5장 기사 수정 / 열람·검색 차단 사례

사례 47 2020서울조정266·267/268·269 / 각 정정·손배청구

온라인상 공개된 영상을 사용하였으나,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데 대해 기사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찌개류 음식을 함께 떠먹는 식탁문화가 전염병 확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하면서, 소위 ‘먹방’ 유튜브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과 음식을 나눠먹는 유튜브 영상을 함께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유튜브인 본인들의 영상을 동의 없이 노출하여 명예가 훼손되었고 해당 보도에 달린 부정적인 댓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정정보도 및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조정대상보도에서 보도한 내용과 영상의 인물은 무관하며 해당 유튜브 영상은 사전동의 없이 사용되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해당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서 보도한 것이지 신청인 개인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재부는 보도의 다시보기 영상 및 기사를 열람·검색 차단하는 조정안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영상 및 조정대상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피신청인은 위 조치 이후 즉시,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영상 및 이 사건 조정대상 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도 해당 보도가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사례 48 2020광주조정20/21 / 각 손해청구

신청인의 부친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기사화하면서 사망 이유를 유족의 동의 없이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부친의 사망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식 투자 실패 때문이라고 지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친의 사망 이유를 위법행위를 통해 입수하였고, 고인의 사망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한 것인데 주식투자 실패라고 단정 지어 보도했으며 익명화했다고는 하나 보도에 지인들로부터 특정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심리 중 피신청인은 해당 기사로 인해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을 인정한다며 이에 대해 사과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기사의 열람 및 검색차단을 요구했고 이를 피신청인이 수용하여 기사를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를 pdf 파일에서 삭제한다.



사례 49 2020서울조정1435 / 손배청구

3년 전 동의 없이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다시 게재한 보도에 대해 기사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모 대학 총장의 교수 채용 대가성 금품 수수에 관해 3년 전 보도한 인터뷰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3년 전 진행된 인터뷰 기사는 신청인과 취재 기자와의 사적 대화를 보도한 것으로 당시에도 신청인이 항의하여 삭제한 바 있는데, 또 다시 동의 없이 해당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실명을 공개하여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과거 신청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다시 게재하면서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에 중재부는 기사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는 조정안을 권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기사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열람을 차단하고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해당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50 2020서울조정1431 / 손배청구

제주의 해수욕장을 걷고 있는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한 데 대해 블로그, SNS 등에 해당 사진이 게재될 경우 피신청인이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통신사인 피신청인은 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를 방문한 여행객들의 방역 지침과 현지인들의 불안감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수욕장을 걷고 있던 신청인들의 일부 모자이크된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해당 사진은 동의 없이 촬영 및 보도되었고, 관광 후 차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잠시 탈착한 상태였는데 이를 마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도하여 기사에 달린 부정적인 댓글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했으며 추후 사진 삭제와 같은 피해구제 노력을 했으므로 금전배상은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중재부는 사진이 이미 삭제되었고 초상권 침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신청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질의했다. 이에 피신청인이 블로그나 카페의 펄클 등에 신청인들의 사진이 게재된 경우 이를 삭제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아와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돼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성산일출봉 탐방로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관광객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송악산과 함덕해수욕장 등 야외 관광지 곳곳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관광객보다 착용하지 않은



이들이 더 많이 보였다.

가족과 함께 제주를 찾은 A씨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관광지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여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펼글 조치사항

블로그나 카페, 페이스북 등에 조정대상기사의 신청인들 사진이 게재된 경우, 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신청인에게 게시물을 특정하여 통보하고 피신청인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 등에게 조정대상기사에서도 사진이 삭제되었음을 명시하여 신청인들의 사진이 게시되지 않도록 삭제를 요청한다.

사례 51 2020서울조정1612/1613 / 각 손해청구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집값 담합 관련 단속을 피해 영업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변조한 중개사의 음성과 사무소 내부를 공개한 방송에 대해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으로 직권결정을 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정부의 집값 담합 현장단속을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미리 알고 이를 피해 전화로 영업을 계속했다고 보도하면서 중개사인 신청인의 음성과 부동산 사무소 내부를 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목소리와 부동산 사무실 내부를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며 3백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해당 보도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단속 대응방법에 대한 것으로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영업여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빈 부동산 내부를 촬영한 것이지 신청인을 특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음성이 변조되었으나 주변인이 신청인임을 알 수 있었고, 신청인이 근무하는 곳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조정대상기사의 검색·열람을 차단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경제면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가 열람 및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줌 등 검색 제휴된 포털사이트에도 각 조정대상기사가 열람 및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한다.



사례 52 2020전북조정77 / 정정청구

기사와 함께 ‘오리발’이미지를 게재해 신청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암시를 한 데 대해 이미지 삭제 및 정정보도 게재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시의회 B의장이 시의회 의장단 선거 전날과 당일에 부인 및 시의원 등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으며, 식비는 모두 동석한 일반인이 계산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B의장은 이틀 모두 음식점에서 식사 후 직접 음식값을 지불했으며 부인은 동석하지 않았는데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신청인 B의장은 16일과 17일 혁신도시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 후 본인이 계산하였고, 신청인의 부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 조정결과

심리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기사 중 신청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오리발’ 사진 삭제, 후속기사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또 선거 직후 음식점에서 ‘불륜 스캔들’에 휩싸여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결정된 해당 여성의원(현 C정당)과 또다른 C당 소속 여성의원인 무소속 의원들과 선거 승리를 자축하는 ‘만찬파티’를 즐긴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선거 전후 밀실담합을 위한 화합과 만찬파티에는 일반인이 음식값을 모두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각종 오해의 소지를 자초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치러지기 전날인 지난 16일 오후 6시 D혁신도시의 한 음식점에는

B의장과 B의장의 부인, E, F, G의원을 비롯해 음식값을 지불한 일반인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어 이튿날인 지난 17일 의장단 선거가 끝난 후인 오후 6시 같은 음식점에는 B의장과 B의장의 부인을 비롯해 전날 회합했던 무소속 의원들과 ‘불륜 스캔들’로 특위에서 제명이 결정된 여성의원, 그리고 C당 소속의 H의원이 참석해 축하만찬을 즐겼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A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치러지기 전날인 16일 B의장 외 3명의 의원과 B의장 부인이 D혁신도시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일반인이 음식값을 지불했으며, A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구성된 날인 17일 역시 같은 음식점에서 B의장 외 6명과 B의장 부인이 식사한 후 전날 식사비를 계산했던 동일인이 음식값을 계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들 모두 B의장이 음식값을 직접 지불하였으며 따라서 일반인이 음식값을 지불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B의장의 부인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더 이상 후속보도를 하지 않는다. 또한 7. 28.자후속 기사 중 삽입된 오리발 사진은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부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그 이후에는 DB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단, 박스처리, 음영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53 2020서울조정2726·2727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업체가 지자체의 지원 사업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본문을 수정하고 기사 하단에 위원회 조정에 따라 기사가 수정되었음을 알리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업체A가 B지자체 식품 알레르기 면역강화제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정치인 연루 의혹이 있으며, 업체의 생산 제품이 알레르기 발현 우려가 있는 제품이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는 적법한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폄하하였고, 선정된 제품의 뒷면에 표기된 알레르기 예방 문구는 예방적 알레르기 표시에 불과한데도 마치 알레르기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허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 업체는 적법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특정 정치인과의 연루설 등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일방의 추측에 불과하다.
- 사업에 선정된 신청인 단체의 생산 제품의 제품 뒷면에 표시된 알레르기 예방 문구는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예방적 알레르기 표시일 뿐, 해당 제품에는 알레르기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 사업 공모에서 제품의 품목에 대해 조건이 제시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하여 공모에 참여하거나 광고하지 않았다.

■ 조정결과

심리 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 중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조정안을 권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기사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지방의 한 지역에서 식품 알레르기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학교급식에 무리하게 특정 제품을 공급하려던 계획이 숱한 비판 끝에 결국 전면 철회됐다. 지역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파문으로 인해 여전히 학교급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선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략]

그러면서 이 사업 ‘정제’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특히 가장 큰 의혹은 선정과정이었다. 6월에 발표된 업체 공모 조건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조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본 조건 이외에도 섭취방법을 ‘조리 중 밥이나 국 등에 첨가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해 타 건강기능식품의 참여를 원천 봉쇄했다. [중략]

제품에 대한 논란은 더욱 심했다. A업체 제품은 버섯이 포함된 가루 형태로, 포장지 뒷면에는 현미가루, 버섯 균사체, 건조 표고버섯 플레이크 등 원재료명이 표기됐다. 문제는 알레르기를 억제한다는 제품 포장지에 ‘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확인 후 섭취하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영양(교)사들을 기함하게 했다. ‘알레르기 억제사업’이라면서 알레르기 발현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공한 셈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표기를 쓰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제품은 이마저도 없는 일반 ‘기타 가공품’이었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기사 수정사항

수정 전	수정 후
기본 조건 이외에도 섭취방법을 ‘조리 중 밥이나 국 등에 첨가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해 타 건강기능식품의 참여를 원천 봉쇄했다.	기본 조건 이외에도 섭취방법을 ‘조리 중 밥이나 국 등에 첨가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해 의혹을 제공했다.
신청인 제품 사진	삭제
‘알레르기 억제사업’이라면서 알레르기 발현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공한 셈이다.	삭제
게다가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표기를 쓰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제품은 이마저도 없는 일반 ‘기타 가공품’이었다.	→ 삭제
B지자체 C학교 영양교사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B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며	B지자체 C학교 영양교사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B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알레르기 억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며
B지자체 D학교 영양교사는 “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학교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를 처음부터 막아내려고 한 주체는 영양(교)사들이었고,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다시 깨달았다”며	B지자체 D학교 영양교사는 “ 알레르기 억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학교로 납품하려는 시도를 처음부터 막아내려고 한 주체는 영양(교)사들이었고,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다시 깨달았다”며



-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조정대상기사와 구분하여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수정된 것입니다.」를 추가한다.
- 또한 피신청인은 위 조치 이후 즉시,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도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가 위에 따라 수정되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사례 54 2020서울조정2654 / 정정청구

미인선발대회 참가자의 초상을 동의 없이 게재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을 사용한 보도에 대해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여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미인선발대회에 참여한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면서 제목에 ‘열정적인 드레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본인의 사진을 사용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드레스’라는 헤드라인을 사용하여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해당 보도의 제목에 오류가 있어 제목을 <2020 B대회 A 열정적인 드레스>로 수정한다. 기사에 게재한 A씨의 사진은 본인이 게재를 원하지 않아 삭제한다.

■ 조정결과

심리가 개최되기 전 피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했고, 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을 취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